

교원업적평가위원회규정

제 정	1995. 3.
개 정	2007. 9.
개 정	2016.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업적을 평가·관리함에 있어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무) ①위원회는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은 교무처장과 학생복지처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3조 (임기) 위원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및 심의)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업적 및 자질평가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각 행정부서별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평정, 인증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심사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심사 예외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 (관계자의 회의참석) 총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8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